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



안전검사 제도 안내

안전검사란?

- ▶ **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**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**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**

※ 안전검사대상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)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적용범위

▶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

-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(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)

대상	대상	비대상
		

▶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-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)에 한정하여 적용

대상	대상	비대상
		

안전검사 실시주기

▶ 시행일: 2016년 8월 18일

- 2016년 8월 18일 이전 등록차량 :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-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차량 : 자동차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
※ 검사 유예기간('17. 10. 31) 근접 시기에 신청이 폭주 할 경우 원활한 안전검사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조기 안전검사 신청 필요

| 검사기관 등 기타 안내사항 |

- **검사기관**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(문의처 : 1544-3089)

※ 안전검사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kosha.or.kr>) 공지사항(893호) 참조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이동식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이탈로 떨어짐



재해사례

▶ 재해개요

- 2016년 12월 12일(월)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 (탑승설비)에 근로자들이 탑승하여 이동 중 작업대가 이탈되면서 탑승 근로자가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, 2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

▶ 재해 상황도



동종재해 발생현황

- ▶ 최근 5년간('11~'16. 10) 총 재해건수 50건(사망 53명, 부상 15명) 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총 16건(사망 19명, 부상 5명)으로 약 32% 차지

2016. 7.
사망 1명



2016. 1.
사망 1명
부상 1명



2014. 11.
사망 2명
부상 1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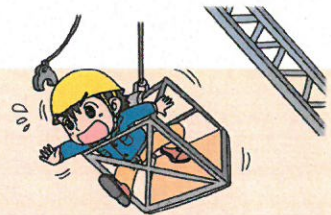
재해발생 위험요인

▶ 불법 탑승설비 부착 (목적 외 사용)

-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투입

▶ 불 등 주요 구조부의 임의 변경

- 이동식크레인 불 등의 주요 구조부 임의 변경(불법 개조)으로 설계·제작 단계의 안전성 미확보



재해예방 대책

▶ 불법 탑승설비 부착 금지(목적 외 사용금지)

- 이동식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하고, 근로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됨
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6조제2항(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▶ 불 등 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

- 이동식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 설계·제작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
*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(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▶ 사용단계에서 안전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

- 이동식크레인의 사용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 사전 위험요소 제거
*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※ [후면 참조]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안내